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박철성 부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명일동 등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
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
정비구역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시민과 전문가 등 위

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제한된 정보접근은 실제 위험 위치 근처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자료와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지하개발 사업 등에 따라 조사한 결과 및 자료 중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은 물론 전문가와 언론도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과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곧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깊이 살피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